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63
----------	------

발의연월일 : 2016. 12. 29.

발의자 : 박정·이찬열·이훈
윤후덕·박남춘·박재호
김정우·어기구·신경민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 3. 29. 공포, 2016. 9. 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 제19조제2항의 관련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가산점 부여) ① (생 략)</p> <p>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 ⑤ (생 략)</p>	<p>제19조(가산점 부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p> <p>-----</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